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6. 02. 25.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2. 제안이유

- 평창군 관내 주둔 군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군과 지역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여 군장병을 평창군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민·관·군 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장병을 발굴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군부대와 지역사회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 ⑦ (생략)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 11. 17.>]